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안 번호	259
----------	-----

발의년월일 : 1994. 7. 19.

발 의 자 : 조승남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속초시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전제, 복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본회의,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토록 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보존회의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토록 함

(안 제6조)

다. 의원이 회의록 원고를 열람, 복사 및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복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회의록을 의회밖으로 대출할 수 없으며,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 전제,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조)

속초시의회의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전제, 복사, 열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원고'라 함은 속기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속기(또는 녹음)한 속기 원문(또는 해독원본)을 번안하여 회의록 작성을 위해 정리된 것을 말한다.
2. '보존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 인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배부 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비공개 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제'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사'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본떠서 작성 또는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7.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 3 조 (본회의 회의록) ①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 4 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 5 조 (배부회의록의 발간, 배부) 본회의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발간하여 배부토록 한다.

제 6 조 (보존회의록의 발간) 보존회의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 7 조 (비공개회의록의 보관)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록의 열람, 복사) ①의원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복사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의장은 1항 내지 3항의 회의록을 의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으며,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 전제,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회의록 게재 신청을 할 경우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에 게재신청은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 10 조 (참고문서등) ①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자구의 정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시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을 경우

④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녹음) ①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녹음의 복사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의록 중 불게재표시) 의장은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보존회의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 반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의록 원고 열람 (복사) 허가 신청서

수신 : 속초시의회 의장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회의록의 원고를 열람 (복사)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복사) 면수 :
2. 사유 (사용목적) :

199

신청인 :

(인)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수신 : 속초시의회 의장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보존회의록중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복사) 면수 :
2. 사유(사용목적) :

199 . . .

속초시의회 의원

(인)

비공개회의록 열람 허가 신청서

수신 : 속초시의회 의장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비공개회의록의 원고를 열람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복사) 면수 :
2. 사유(사용목적) :

199

속초시의회 의원

(인)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계 재 신 청 서

수신 : 속초시의회 의장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회의록에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하고자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신청인

(인)

자 구 정 정 요 구 서

귀하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회의록중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정 정 사 항 >

面	段	行	誤	正

199 . . .

신청인

(인)

회의록중 불게재 (不揭載)

제 회 속초시의회 제 호 회의록 내용중 주선(朱線) 및
표시부분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199 . . .

속 초 시 의 회 의 장
(위 원 장)